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 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요건 합리화(안 제92조의2 제2항제1의13호)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함.

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92조의2제4항제6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도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22. ~ 7.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다목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목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제1의1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의1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
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
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
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
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4조제4항의 전
환 규정을 준용한다.

1의14. ~ 4. (생략)

③ (생략)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말한다.

1. ~ 5. (생략)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
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
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1의14.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

한정한다)에게 <u>2022년 12월 3</u> <u>1일까지</u> 주택 건설을 위한 토 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생 략) ⑤ ~ ⑨ (생 략)	----- <u>2024년 12월 31</u> <u>일</u>----- ----- 7.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8